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0. 9. 7. (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1. 회부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0. 8. 25.
- 회부일 : 2020. 8. 26. (의안번호 : 20-104)

2. 제출이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활기찬 노년(Active Aging)과 정든 곳에 나이 들어감(Aging-in-place)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살아가고 싶은 고령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령화친화도시 구성의 목적)안 제1조~제4조

- 고령화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나. (고령화친화도시 계획수립)안 제5조

- 노인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규정

다. (고령화친화도시 구성)안 제6조

- 노인문화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안 제7조

- 기초조사, 정책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 사무규정

마. (국제교류의 활성화, 교육, 평가 등)안 제8조~제10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상기 사항을 규정

바.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제17조

- 추진위원회를 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심의 및 자문 규정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규정
- 위원회 임기, 해촉, 수당 등에 관한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연구용역비 50백만원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7. 16. ~ 2020. 8. 5.
- 2)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3)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4)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특이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1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 본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과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 하였고, 이후 2017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기

며 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UN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고령화사회는 총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사회는 14%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를 뜻하며, 여기서 고령인구란 만 65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 우리 구도 올해 1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2,382명으로 전체 인구 373,951명 중 약 1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갖춰진 도시를 의미합니다.
- 또한, 고령친화도시에서 의미하는 주민은 노령인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모든 인구집단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나이로 인한 어려움 없이 생애전반에 걸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생애주기별 복지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8조와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고령화와 도시화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2007년부터 활기찬 노년, 지역사회 계속 거주, 세대 통합 등의 주요가치를 실현하고자 8대 영역에 대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 중 하나로 판단 됩니다.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을 토대로 마포구 여건에 맞는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